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강선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101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0. 6.

발의자 : 강선영, 한상욱, 신찬호,
고찬양, 이종숙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
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개정되어
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
(안 제10조)

나.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순서 정리(안 제11조 ~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제4조의5, 제4조의6

나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

강서구의회(전화: 2600-1807, 팩스: 2620-0515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처우개선위원회)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8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 4조의5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에 관

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0조(처우개선위원회)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제8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 <u>2. 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</u> <u>3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 <p><u>③ 위원회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르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다.</u></p>
<p><u>제10조 · 제11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11조 · 제12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</u></p>

□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**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**

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**제4조의5(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**

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-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 - 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 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4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제4조의6(지역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, 해임·해촉,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중앙위원회”는 “지역

위원회”로,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은 “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본다.

② 제4조의5,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